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11. 17 선고 2022가단5472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전남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2. 10. 27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7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11,641,769원 및 그 중 11,388,246원에 대하여 2022. 4. 22.부터 2022. 5. 10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1. 4. 27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B는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4. 29. 접수 제323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피고 A의 경우 답변서와

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함)

판사 허정룡

별지